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시 중구 창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2F
전화 02) 2273-9535 팩스 02) 2273-9539
E-mail: kwau@women21.or.kr
http://www.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부

경기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 전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성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함께하는 주부모임
울산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 아이들에게

-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보육제도 바로 세우기 -



여성연합발간

2002-13-(7)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보육교사회

이 홍보책자는 여성부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 낳기가 무섭습니다.

낳는데도 돈이 들지만 키우는데는 더 많은 돈이 듭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나가지만 양육비를 감당하기가
무섭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되면 사회의 일꾼으로 살아갈텐데
아직도 아이 키우기는 가정만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없는 사회, 아이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많이 버는 가정의 아이나 적게 버는 가정의 아이나
모든 아이들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골목마다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있지만 비용 때문에,
시간 때문에, 시설환경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보육비용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질 높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보육제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아이 키우는 책임을 함께 하는 일,
공보육의 시작입니다.



공보육이란 ?

아이를 키우는 비용,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비용의 부담 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가정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이들이 자라기에 가장 좋은 환경은 가정입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무, 육아 휴직 제도의 실질적인 정착 등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돕는 다른 제도도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은 직장과 가정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곳입니다. 대가족이 해체되면서 한부모 가족, 주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나타나고 가정에서만 육아를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들만이 아니라 육아문제에 상담이 필요하거나, 자녀에게 또래와 어울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가정, 그밖에 아이 키우기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모든 가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왜 아이 키우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나요?

65세이상의 노령인구가 2000년에 7%를 상회하여 우리사회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즉 일할 수 있는 젊은이는 점점 적어지고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는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사회를 유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졸이상의 고학력 여성의 취업율은 20대에 상승하다가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면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아이 키우는 문제가 가정에서, 여성만의 책임으로 남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문제 해결 없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계속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를 정부, 사회, 가정이 함께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차등보육료제도 도입!!

한달에 120만원을 버는 가정이나 300만 원을 버는 가정이나 보육비를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육비 지원은 4인 가족 기준 한달에 105만원의 수입이하인 경우



에만 그것도 보육비용의 50%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등보육료제도는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0만원이라면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차등보육료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가정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과 활성화!!

아주 어린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어도 맡아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근무시간에 맞추어 이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이는 교사가 담당하는 수가 적어야 하고, 야간보육이나 연장보육을 하려면 교사를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에서 운영상의 문제로 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정부가 시설의 설치,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영아보육, 장애아 보육, 야간보육, 휴일 보육, 24시간 보육 등은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국공립시설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16%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관리를 받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조사하고 필요한 수만큼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 민간시설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

현재 보육시설의 70%이상이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입니다.

모든 아동들이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모든 아동은 동일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간시설에도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질 좋은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보육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기관-정부의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보육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 **좋은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01_충분한 보육공간 확보!!

아동 1인당 보육시설면적은 불과 3.63㎡. 하루종일 생활하는 보육실(교실) 면적만이 아닌 복도, 화장실, 조리실, 자료실 면적 등 전체 시설면적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한창 기고 걷기 시작하는, 그러나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기엔 아직 어린 영아들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령과 아이들의 발달을 고려한 시설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움직이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 당 면적기준은 보육실을 기준으로 하고 연령에 따라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02_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조정!!

교사가 아이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비율이 되어야 합니다.
36개월 이상의 유아는 1명의 교사가 20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쌍둥이를 데리고 있어도 힘이 드는데 화장실 뒷처리까지 도와주어야 하는 유아를 한 공간에 20명씩 몰아놓고서는 아이들과 눈을 마주 보고 이야기할 수도, 조용히 안아 줄 수도 없습니다.



걸음마도 겨우 하는 12개월~24개월 영아를 혼자서 5명을 돌보라고 합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지 않고서는 질 높은 보육은 불가능합니다.

03_안전기준 강화!!

하루종일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엄마의 눈으로 들여다보듯이 꼼꼼하게 시설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전기제품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모든 기구와 놀잇감과 생활용품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비상연락망과 대피장소와 비상구를 마련하도록, 나들이를 갈 때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철저하게 점검하여 어린이집 운영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도 필요합니다.

04_질 좋은 프로그램 제공!!

유아기인 7세 이전에 인간의 중요한 발달이 모두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령과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것을 시행하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루 10시간이상 방학도 없이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연구할 시간도 재교육을 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교사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05 건강관리 시스템 마련!!

유아기는 가장 왕성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질병에 취약한 시기입니다. 이런 영유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어야 하며 어린이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다양한 보육유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01_다양한 시간으로 운영하기!!

사회가 다변화하고 다양한 생활주기와 직업이 출현하면서 각 가정의 상황은 한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도 충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야간, 휴일, 시간 연장제, 24시간, 일시, 긴급보육 등 다양한 보육형태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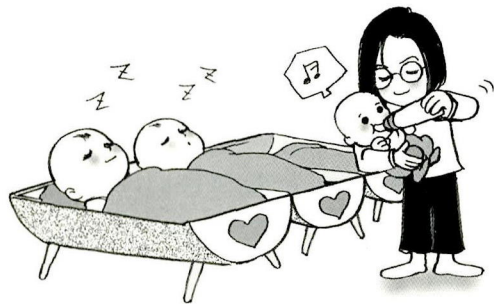
국공립시설이나 민간시설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정부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2_출산휴가 3달, 육아휴직제도가 있지만 1년뿐.

그러나 그 후는?

영아를 위한 시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기저귀도 떼지 못한 영아를 돌보기 위해서는 엄격한 시설기준과 내 아이처럼 돌봐 줄 경험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영아보육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3_초등학생이라고 혼자 할 수 있나요?

학교가 끝나면 혼자 문을 열고 들어가는 텅 빈 집.

학원과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성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후 어린이집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어린이에게는

격려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만나 사귀는 소중함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다운 참된 놀이문화를 즐기고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영유아와는 다른 욕구와 지도가 필요한 학령기 아동을 위해

방과후 어린이집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학교가 끝나면 엄마처럼 따뜻하게 맞아주고 숙제도 봐주고 간식도 주면서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보살펴 줄 방과후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04_장애아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래와 어울릴 기회조차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통합보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일의 아름다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장애아 가정도 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들을 위해 장애통합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개정되어야 할 영유아보육법 조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 및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복지와 교육에 기여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족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보육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민간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육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시설은 빈곤계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지역별·연령별 일반보육 및 특수보육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부모협동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개선,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보육아동에 대한 학대 또는 방임 등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를 행하지 못했을 때
	제23조(특수보육서비스의 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국 공립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아를 위한 특수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보육서비스의 우선제공) ①정부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은 법정저소득층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 장애아에게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제 5 장 건강 영양 안전 제27조(건강관리)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아동의 건강기록카드를 구비하여 연 1회 이상의 건강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취학아동의 건강관리는 학교에서 실시한다. ②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에는 치아 건강진단이 포함되도록 한다.
신설	제28조(지정의료기관) ①시·군·구의 장은 모든 보육시설들이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지)소, 소아과, 가정의학과의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료과목을 표방하는 의료기관을 지정의료기관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종사자나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정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지정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신설	제37조(비용의 부담) ①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차등 지원한다.

아이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보육제도가 바로 서야 합니다.

♥ 보육이 바로 서기 위해 꼭 필요한 일 ♥

1.

육아문제를 국가와 사회, 가정이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보육비용지원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유치원, 학원 등 유아를 담당하는 다른 기관들과의 바람직한 역할
조정과 협력을 위해 정부안에 책임 있는 조정기구가 필요합니다.

4.

현재 운영되는 보육시설의 문제를 개선하고 공보육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TEL:02)2275-8505~6 FAX:2275-8506
E-mail:kdta@chollian.net
<http://www.kdta.or.kr>

여성이기록하고여성이기억
하는여성을기록하고여성을
기억하는바로이곳성평등
서관여성이기록하고여성이
성평등기록하고여성이
고미평등기록하고여성이
성평등기록하고여성이
기록하고여성이
을기록하고여성이
바로이곳성평등
여성이기록하고여성이기억
하는여성을기록하고여성을
기억하는바로이곳성평등
도 서 관 여 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

· 국 · 보 · 육 · 교 · 사 · 회 ·

년 2월 지역사회아동교사회로부터 시작한 지역사회탁
연합회를 전신으로 하여 1997년 7월 한국보육교사회로
한 단체입니다.

육교사회는 전국 보육교사들의 조직으로서, 모든 아
인권보장 및 바람직한 보육권리의 실현을 위한 재반
과 보육교사들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권익실현을 위한
을 통해 육아의 사회화를 이루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나.

보육교사회 지부

육교사회

남보육교사회

육교사회

육교사회 (051-554-9668)

육교사회 (02-2271-1548)

인천보육교사회